

## 사전재난영향평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30일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	건축물 구분	[ ] 초고층 건축물 [ ] 지하연계 복합건축물		
	설치등 구분	[ ] 신축 [ ] 증축 [ ] 개축 [ ] 재축 [ ] 이전 [ ] 대수선 [ ] 용도변경		
	건축물 명칭	준공일		
	건축주	성명	연락처	
		주소		
	대지 현황	대지 지번	대지면적	m <sup>2</sup>
	건축물 현황	면적	연면적 m <sup>2</sup> , 건축면적 m <sup>2</sup>	용도
층수		지상 층, 지하 층	수용인원 명	
지하역사 명칭				
지하도상가 명칭				

신청일	0000. 00. 00.
신청사유	

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1.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서류 2. 「건축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,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### 처리절차

